

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(완구, 학용품)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(안) 행정예고



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7일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라 어린이제품(완구, 학용품)이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을 보완하여 부속서 개정(안)을 행정예고하였다.

- 주요 내용은 학용품 구분 내 분류되었던 점토류 제품에 대해 완구로 관리 일원화이며, 품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[완구, 학용품 부속서 공통 개정사항]

구분	현재	개정(안)	비고
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	규제 없음.	규제 내용 추가	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통일
납	기준치 300 mg/kg	기준치 100 mg/kg	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통일
프탈레이트계 가소제	DnOP, DINP, DIDP는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의도된 완구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	해당 내용 삭제	규제물질을 6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문구를 삭제함.

[학용품 부속서 개정사항]

학용품 구분	현재	개정(안)	비고
점토류 안전기준	정의 및 기준 내용 있음.	점토류 관련하여 해당 내용 삭제하고 [완구] 부속서로 이관	-

◆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예고(2020. 11. 27.)